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강승규 · 박덕흠 · 임이자
신동욱 · 서일준 · 김희정
고동진 · 김미애 · 김기웅
박수영 · 김재섭 · 박대출
박충권 · 강선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·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,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,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 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,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.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축 제한,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

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).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시장·

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별법)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</u> <u>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</u> <u>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</u>